

-건축법 제21조 및 건설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상의 위반사항을 시정 및 지도 감독하여야 하나 일부 공사현장의 경우 상주치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이 미흡한 사항으로 시정조치 바람.

부천시의회규정

목 차

- 부천시의회포상규정(부천시의회규정제1호)
- 부천시의회기및배지등에관한규정(부천시의회규정제2호)
- 부천시의회방청규정(부천시의회규정제3호)
- 부천시의회참관에관한규정(부천시의회규정제4호)

부천시의회포상규정

1993. 6. 11

부천시의회규정 제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사회도외와 미풍양속의 정화 양양에 출선수범한 경우
3.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배)은 의회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여 선양시킨 시민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습,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3호 서식에 따른다.

②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대상자의 추천) ①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각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한 때에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에정일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에 의한 공적심사 내용을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포상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6인으로 구성으로 한다.

③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결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19 년 월 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19 년 월 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19 년 월 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①성명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③군번(군인의 경우)								
④국적 (외국인에한함)																
⑤주소																
⑥직업					⑦소속											
⑧직위					⑨등급(직급)				⑩공적기간							
⑪공적요지(50자 내외)								⑫공적분야								

추천자

⑬소속		⑭직위	
⑮직급		⑯성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성명

인

(뒷면)

주요 학력 및 경력

⑦년 월 일	⑧이 력	⑨년 월 일	②이 력
~		~	
~		~	

⑦년 월 일	⑧이 력	⑨년 월 일	②이 력

공 적 사 항

(별지 제5호 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공적심사요구자 인 적 사 항	소 속	직 위	성 명	공 적 내 용
의 결 주 문				
이 유				

위와 같이 의결함

19 년 월 일

부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부천시의회의회기및배지등에관한규정

1993. 6. 11

부천시의회규정 제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시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휘장의 사용) 의회 휘장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휘장의 규격등) ① 의회 휘장의 문양은 다음과 같으며, 모형은 별표1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내부 : 내부에 議자를 표시
3. 색상 : 무궁화 형상, 議자는 황금색으로 한다.

원형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시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

1. 기면은 시 상징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시한다.
3. 휘장표지의 직경은 세로의 2분의 1로 한다.
4. 의회기의 모형은 별표2와 같다.

③ 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의회 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 형상 : 1.7cm
2. 원 형 : 1cm
3. 재 질 : 은으로 하되 무궁화 형상은 입체적으로 제작 황금색으로 도색한다.

제4조(휘장사용제한) ① 의회 휘장도안은 의원을 제외한 개인의 관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의회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의회기 게양 및 관리)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은 국기의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교부 및 패용)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 ③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 ④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전에 제작 사용중인 휘장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휘 장 모 형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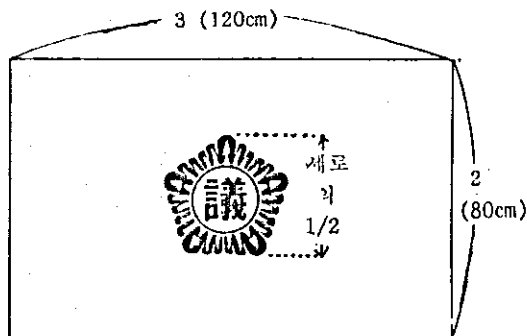
(설 명)

- 외형 : 우리나라의 상징인 무궁화꽃
- 내부 : 의원을 상징하는 “議”자 표시

(별표 2)

의 회 기 규 격 모 형 도

1. 모형 및 규격



2. 재 료

- 옥외용 : 광택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 가장자리 부분은 “후렌지” 부착

(별표 3)

배 지 모 형 도

1. 모 형



2. 규 격

모	형	내	용	규	격	색	채
무	궁	화	형	5지	1.7cm	금	색
원	형				1.0cm	흰	색
부	천	시	회	장	0.7cm	금	색
자	채				0.7cm	금	색

※ 재료는 은으로 하되 색채중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 “흰색”은 백색 칠보로 도금

부천시의회방청규정

1993. 6. 11

부천시의회규정 제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회의가 개의중이거나 위원회의 회의가 개회중인 때에 의사진행 과정을 방청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전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청권의 종류 등) ① 방청권의 종류는 일반시민을 위한 일반방청권, 보도기관 종사자 또는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자를 위한 장기방청권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방청권은 1인당 1매씩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급당일에 한하여 방청할 수 있다.

제3조(방청권의 교부) ①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방청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② 방청권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견제를 받은 후 방청인에게 교부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방청권 수를 제한 발급할 수 있다.

제4조(방청권의 제시) 방청인은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공무원증 또는 방청권을 제시한 후 사무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제5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자, 외투를 착용하거나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2.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다.
3.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청의 제한 및 퇴장) ①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술취한 자, 정신이상자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②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일지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인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사용중인 방청권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천시의회참관에관한규정

1993. 6. 11

부천시의회규정 제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의회참관(이하 “참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참관이라 함은 부천시의회의 방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부천시의회 내의 기구와 시설을 시찰함을 말한다.

제3조(참관의 종류) 참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귀빈참관
2. 단체참관
3. 외국인참관
4. 개인참관

제4조(참관대상) ① 참관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장
2. 상임위원회 회의실

3. 기타 참관인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될 시설

제5조(참관의 허가 등) ① 참관은 의원, 의회소속 개장이상의 공무원의 소개 또는 참관인이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별표1의 양식 또는 공문)에 의하여 의장이 허가한다.

② 참관시간은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되, 오전은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14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③ 참관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본회의가 개의중일 때에는 참관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다.

제6조(참관 및 안내) ① 참관은 다른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행한다.

② 참관 안내공무원은 참관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을 주지시키고, 정중하고 간명하게 안내설명을 하여야 한다.

1. 금연 및 금식(깍 등)

2. 정숙 및 질서유지

3. 시설물에 대한 훼손 및 오손의 금지

4. 부피가 크거나 시설물을 손상시킬 만한 소지품에 대한 보관

제7조(안내담당공무원의 임무) ① 참관안내공무원은 안내에 필요한 장비 및 설명서 등을 준비하여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내담당공무원은 단정한 복장으로 품위와 친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참관의 제한) 의장은 의회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참관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김정일로부터 시행한다.